

안세재경저널 회원용 · 2020년 9월 30일 (수) · 주간제 40 · 41호 · 통권 제 1488 호 · 지방세법률 개정안 · 관계법률 개정안 · 구독료 월 3000 원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taxpark.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 추석 연휴로 인하여
1486·1487호 통합 발행되었습니다.
풍성한 추석 한가위 보내십시오

CEO 에세이 – 이해악원장

현금결제하면 품질 높아진다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
중견·중소기업들이 보편적으로 애용하는 세액감면·
공제 혜택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접대비와 기부금은 업무관련성 여부로 구분한다
-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주택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 상장회사의 위반사례로 보는 회계부정 예방을 위한
Check Point 안내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상거래관행에 위반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용료수수료는 지주회사와 소속 기업집단간이라도
시가로 인정됨

(p.13)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 세무조사결과 현금매출수입누락으로 판명난 경우의 본세와 가산세, 건보료 등 총부담(110% 이상) >

- 매출누락의 발생사유 : 거래상대방이 비사업자, 세금계산서 수취거부, 원인불명 입금액을 가수금(대표자 차입금)등으로 회계처리 반영한 경우, 거래하던 사업자가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세금계산서 미발행

항목	본세계산방법	가산세율(3년 경과)	합계세율(지방세 1.1)
부가가치세	누락액, 가수금금액 × 10%	미발행 : 공급가 × 2% 무신고 : 세액 × 20% = 2%	14%
법인세	익금산입 : 해당 누락금액 × 가수금액 ×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과소신고가산세 산출세액 × 20%미납 부가산세(하루 0.03%): 연 10.95% × 3년간 = 32.85%	$20\% \times 1.5285 \times 1.1 = 33.627\%$
상여소득처분 (대표자, 귀속자)	매출누락은 대응경비가 없어 귀속자나 대표자의 상여처분 : 연봉 1억 내외 가정하면 한계세율은 35%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과소신고가산세 : 세액 × 20%미납부가산세 : 연 10.95% × 3년간 = 32.85%(합 52.85%)	$35\% \times 1.5285 \times 1.1 = 58.847\%$
상여금액의 건강보험료	국세청의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따라 건보공단에서 자동 부과함. 6.67%	최소	최소 6.67%
합계	결과 : 매출누락 금액이나, 가수금처리 해당액의 1.13배 가 되는 총부담액임(본세 : 65%+건보료 6.67%+가산세 42%)		113.144% (개인은 80%)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486, 1487 호 / 주간 40, 41호 2020. 9. 30. (수)

- 발행인 : 이윤선
- 제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 FAX :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 · 수도권 · 경기 · 인천
전화:02) 829-7575
팩스:02) 718-8565
- 부산 · 경남
전화:051) 642-3988
팩스:051) 642-3989
- 대구 · 경북
전화:053) 654-9761
팩스:053) 627-1630
- 대전 · 충청
전화:010) 3409-2427
팩스:042) 526-1686
- 수원 · 안산
전화:010) 5255-6116

♣ 매월 구독 · 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안세 Taxpark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족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전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세무조사결과 현금매출수입누락으로 판명난 경우의 본세와 가산세, 건 보료 등 총부담(110% 이상)	표지
긴급 시사해설	중견·중소기업들이 보편적으로 애용하는 세액감면·공제 혜택	2
C E O 에세이	현금결제하면 품질 높아진다	3
세무·회계 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용역제공과 관련없이 받는 지원금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함 -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임대중인 경우로써 거주주택특례가 적용 되는 경우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됨 - 자산의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도 취득원가로 반영함 -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한해 세액공제가 적용됨	5 6
눈에 맞는 절세미인	접대비와 기부금은 업무관련성 여부로 구분한다	7
매일 절세재무요점	- 세법개정안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주요내용 - 매입임대주택 자동·자진탈소에 따른 세제지원 변화	9 10
직장인 Survival	목표가 있어야 희망이 생긴다	11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민법」 제32조에 따라 2018.3.2.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 나 2019.9.30.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법인에게 2019.1.1.전 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 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제1항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령법인-1200, 2020.03.26) - 공개입찰방식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이후 시가의 변동을 초래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사전법령법인-110, 2020.02.27)	12 13
세정뉴스와해설	올해 끝나는 '벤처투자 세제지원', 3년 연장 추진	13
마케팅 Tax consulting	상거래관행에 위반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용료수수료는 지 주회사와 소속 기업집단간이라도 시가로 인정됨	14
세무정보	-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주택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15 26
회계정보	- 상장회사의 위반사례로 보는 회계부정 예방을 위한 Check Point 안내	35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을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48

중견 · 중소기업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애용하는 세액감면 · 공제 혜택



박윤종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기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개념, 항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① 적용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② 목적	중소기업지원육성	부품·소재·기본기술산업육성
③ 필수요건	중소기업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④ 해당업종	제조, 건설, 농·어·광업, 도·소매, 의료업, 대부분의 기술·설비기반의 서비스업 등	일반업종 모두 해당(중소·중견·대기업도 적용가능)
⑤ 적용방법	과세이익×법인·소득세율×감면비율 (수도권 외 소기업 30%, 수도권 소기업 20%, 도소매, 의료 소기업 10%, 수도권 외 중기업 15%, 수도권 중기업 10%, 도소매 중기업 5%)	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30%(중소기업), 25%(중견기업), 20%(일반기업)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경상비) • 초과액의 25%(중소 50%, 중견 40%) • 일반금액 : 중소기업 25%, 비중소기업 10%
⑥ 최저한세 적용여부	최저한세 적용됨(중소기업 7%, 비중소기업 10%, 1천억 이하 12%, 일반기업 17%)	①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안됨 ② 비중소기업은 최저한세가 적용됨

현금결제하면 품질 높아진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출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 윤윤수 (Fila코리아 회장), 이해익 공동칼럼

휠라코리아의 의류내수사업은 대단한 성공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휠라전체의 연간 매출액 15억 달러 중 필자가 직접 경영하는 10억 달러 이상의 국제적인 네트워크 신발사업에 비하여 규모면에서는 아직 작다.

그러나 필자는 각별한 애정을 느끼고 있다.

휠라 코리아의 의류제품은 95%가 국내의 협력업체에서 생산한다. 5%만이 수입품이다. 따라서 브랜드만 외제이지 실제로는 국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브랜드 업계에서 유래없이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우선 소비자들이 휠라제품을 무척 좋아했다.

예전에 접해보지 못했던 독특한 디자인과 색상이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다. 처음에는 강렬하면서 깨끗한 이미지의 제품을 선보였다. 이 점이 백의민족인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그대로 맞아떨어진 모양이다.

또 하나는 당연한 말이지만 품질이 좋은 까닭이다.

고객은 현명하다. 한번만 입어보고 또 빨아보면 금방 품질을 판명한다. 그래서 그 평가는 입과 입을 통해 바로 바로 퍼져 가게 마련이다.

특별히 광고가 필요 없을 정도다.

이렇듯 최고의 품질을 보유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국내협력업체의 생산대금에 대한 현금지불 정책이다.

누구는 몰라서 대금을 현찰로 못 주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 그런 점에서 특별한 비결일 수 없지만, 현실은 몇 개월짜리 어음 지불이 엄연한 관행이 아닌가.

필자는 현금지불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때문에 사업벽두부터 충분한 자금확보에 골몰했다. 다행스레 신발사업의 성공을 담보로 한 필자의 제안에 대하여 본사는 쾌히 응했다. 자금 문제는 해결했다. 그런 후 전산, 정보시스템에 힘입어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잘라서 주문 생산했다. 그리고 그것을 거의 100% 완전판매하기 때문에 낭비가 거의 없다. 그만큼 회사의 이익도 확보되었다. 가격을 턱없이 높이 매겨 소비자에게 뒤집어 씌우다가 왕창세일하고도 재고 때문에 허덕이지 않아도 되었다. 즉 재고의 최소화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생산공장들이 자기가 직접 파는 물건처럼 자발적으로 품질관리에 정성을 다하도록 하는데 훨라코리아는 몰두했다.

하청분야의 일반적인 관행을 보면 제품가격의 20%정도를 공장의 봉제생산비로 떼어간다.

그러나 훨라는 여기에 5%를 더 주는 인센티브제도를 채택했다. 물론 무조건 5%를 더 주는 게 아니다. 제품을 그만큼 잘 만들어야 주는 것이다. 그런데 제품을 막연히 잘 만들라고 하면 기준이 애매하다. 다른 기회에 전산·정보화 노력에 대해 언급하겠지만, 훨라는 각 공장의 제품을 전부 전산처리한다. 그후 판매결과에 대해 평가한다. 반품이 몇 %이하면 5%, 어디서 어디까지는 4%, 이런 식의 인센티브제도에 의해 자발적인 품질관리를 유도했다.

그러니 각 공장들이 자기네 물건처럼 정성들여 만들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서 이러한 제도는 훨라와의 동질감으로 승화되기도 했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하청업체가 아닌 협력업체다.

속고 속이는 관계가 아니다. 착취와 협박대상일 수 없다. 상생관계인 것이다.

몇달간이라도 자금을 굴리기 위해 어음을 지급하는 꼼수가 존재하는 현실이다.

Win Win, 이론이나 구호나 당국의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다.



용역제공과 관련없이 받는 지원금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함

Q

당사는 해외 소프트웨어 국내 충판업체입니다. 해외업체로부터 마케팅지원금 받아 이를 당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국내 리셀러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아래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와 적합 증빙을 문의드립니다.

1. 해외업체로부터 마케팅지원금을 받았을 때 당사의 회계처리
2. 해외업체로부터 받은 마케팅지원금을 국내 리셀러 업체에게 지급했을 때 당사의 회계처리
3. 2.의 거래에서 적합한 거래 증빙

A

1. 해외법인과 계약을 체결후 마케팅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액이라면 매출에 해당하며, 용역제공과는 별도로 받는 지원금 성격이라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국내업체에 지급하는 지원금 역시 미찬가지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것이라면 세금계산서 수취하면서 지급하면 되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지급하는 지원금은 판매촉진비나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모든 거래업체에게 사전에 약정에 따라 일정요건 충족시 동등하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판매촉진비로,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하거나 특정업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라면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임대중인 경우로써

거주주택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됨

Q

본인은 주택임대업으로 등록되어있는 여러채가 있으며

주택임대등록이 되어있지않은 주택을 매도(조정지역 내)할려고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세율적용 시 주택임대등록되어있는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세율을 적용해야하는지요.

예)조정지역 내 2주택자 : 기본세율 + 10%

조정지역 내 3주택자 : 기본세율 + 20%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규정에 의거하여 주택 양도일 현재 여려주택을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임대중인 경우로서,

양도하려는 주택이 2년 이상 보유·거주한 거주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2년이상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

자산의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도 취득원가로 반영함

Q

취득원가 산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 신규 생산라인을 확보하고자 기존 1층에 있는 사무실을 철거 후 3층으로 옮기고 1층에 생산라인을 신규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 철거비용은 2억원 정도이고, 생산라인 설치는 5억원 정도라고 하면 사무실 철거비용은 비용처리하고, 생산라인 설치만 기계장치로 잡을것인지?

아니면 사무실 철거비용도 생산라인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기계장치로 잡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자산의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도 취득원가로 반영하여야 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생산설비 설치를 위한 철거비용도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한해 세액공제가 적용됨

Q

숙박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신용카드등 매출 세액공제를 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결제를 한 경우에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를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 대행업체에서 보내온 결제내역 중 CARD, NCARD, DIRECTCARD, 로 결제 된것은 카드 매출로 신고 가능하다고 표기 되어있습니다.

대행업체를 통해서 결제 받은 금액 중 결제 수단이 CARD로 결제 받은 금액을 카드 매출로 보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해도 되는지요?

A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거래처가 결제대행업체라면 가능하나 결제대행업체가 아니라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접대비와 기부금은 업무관련성 여부로 구분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접대비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접대비는 채권의 포기, 사은품 제공, 매출에누리 및 할인 등의 다양한 거래형태로도 나타나므로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 등 유사비용과 구분이 매우 어려운데, 접대비와 지출 형태가 유사한 비용들과의 구분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접대비와 기부금의 구분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은 업무와 관련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데, 거래 상대방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금전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면 기부금으로, 업무와 관련된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지출금액은 접대비로 처리한다.

구 분	접 대 비	기 부 금
지출 성격	• 상품 등의 판매나 용역의 공급, 원재료 등의 구매, 수익창출에 따른 담배, 거래의 성립을 위한 교섭 등과 관련된 지출	•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지출 상대방	• 업무관련 관계자로 거래상대방, 거래의 중개 · 알선 · 조정자, 사업의 지도 · 감독 · 통제 등의 업무를 하는 자	• 기부금 인정단체에 지출하는 경우 한도내에서 손금산입 • 기부금 인정단체가 아닌 자 등에게 지출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 구분

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에 지출되는 경비로서, 그 형태가 접대비와 유사한 경우라도 비용의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직접적 · 결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반영한다.

이와는 달리 접대비는 지급의무가 없으며, 해당 지출이 수익 실현에 직접적으로 대응되지 아니하여 지출효과가 계측되지 않는 비용이다.

구 분	접 대 비	기 부 금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현물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기준 또는 지급의무 없이 임의로 지출하는 금액이나, 지급기준에 의한 판매수당 또는 장려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초과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 또는 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 사전광고 등에 의해 거래처별 판매실적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일정 조건에 따라 지급에 차등을 두어도 인정됨
할인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할인하거나, 약정 또는 할인기준을 초과하여 할인하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에 따라 할인하거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할인 하는 금액
경품 · 사은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고객에 한하여 지급하는 사은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경품 및 사은품 등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분

광고선전비란 상품 · 제품 및 용역의 판매촉진 또는 공급확대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선전효과를 얻고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촉진의 효과를 얻기 위한 기업이미지 제고 목적의 광고도 포함한다. 그러나, 특정 고객만을 상대로 하여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는 접대비이다.

구 分	접대비	광고선전비
지출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와 관련된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와 관련된 지출
지출상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관련 특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특정 다수

채권포기액의 접대비 반영

법인이 채권의 일부나 전부를 포기하는 경우는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반영하여야 하는데,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수표 · 어음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와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업무와 관련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경우 접대비로 인정된다.

거래상대방	채권포기 유형	처리내용
특수관계자 외의 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손금산입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접대비
	업무와 관련 없는 채권의 포기	손금불산입(기부금)

365 매일 절세 재무 요점

- 안전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세법개정안 중 중소기업 · 소상공인 관련 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	중소기업 대상으로 소득세 · 법인세 5~30% 감면(~'20. 12. 31.)	적용기한 2년 연장 (~'22. 12. 31.)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10개 제도 운 영 중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제7조의4)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대금의 0.1~0.2%를 세액공제(~'20. 12. 31.)	적용기한 2년 연장 (~'22. 12. 31.)
중소기업창투사 등의 소부장 전 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	비과세 특례제도 신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126조의2)	소득공제한도 최대 300만원	최대 330만원으로 인상 ('20년 한시 상향)
기타	투자촉진,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 제도 운 영 중	적용기한 연장



나라별로 다른 주식 거래제도 및 과세

	한국	미국	중국
정규장 시간	9시~15시30분	23시30분~6시 30분~14시 휴장	10시30분~16시(12시 30분~14시 휴장)
최소주문단위	1주	1주	본토기준 매수시 100주, 매도시 1주
결제일	2영업일 뒤	3영업일 뒤	1영업일 뒤
배당소득세	15.4% (지방소득세 1.4% 포함)	15%	10%



매입임대주택 자동 · 자진말소에 따른 세제지원 변화

주택구분	단기임대(4년)			장기임대(8년)			
				아파트		아파트 외	
임대등록	폐지			폐지		유지	
	자동말소	자진말소		자동말소	자진말소		기존등록
말소등록		의무기간 1/2이상 임대 후 말소	의무기간 1/2미만 임대 후 말소		의무기간 1/2이상 임대 후 말소	의무기간 1/2미만 임대 후 말소	
양도세 중과배제	중과배제 (양도시기 무관)	중과배제 (말소 후 1년 이내 양도시)	혜택 없음	중과배제 (양도시기 무관)	중과배제 (말소 후 1년 이내 양도시)	혜택 없음	신규등록
거주주택 양도세 비 과세	말소 후 5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혜택 없음	말소 후 5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혜택 없음	혜택유지 (말소시 혜택 없음) 혜택유지 (임대의무 10년으로 변경)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보유중 합산배제(말소 후 합산) ※말소 후 추징 안함						
임대주택 장특공제	혜택 없음			말소 후 50%	혜택 없음		8년 50% 10년 70%

*폐지 임대유형 : 단기임대주택,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폐지 임대유형으로 2020.7.11~2020.8.17 신규등록, 단기→장기 전환은 세제지원 배제

자동 · 자진말소 세제혜택 2020.8.18 이후 분부터 적용

자동 · 자진말소 임대기간 계산 : 지자체 임대기간 기준(세무서 등록 후 임대기간 X)

임대기간 8년→10년 연장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



목표가 있어야 희망이 생긴다

그저그런 삶을 꿈꾸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꿈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생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희망도 보이지 않고,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꿈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작은 어항에 잉어를 키우면 다 커봤자 6cm에 불과하지만, 큰 어항에 키우면 30cm, 호수에 풀어서 키우면 1m까지 클 수 있다고 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성장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람은 외부환경보다는 스스로의 마음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큰 목표와 꿈을 가진 사람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꼼꼼한 인생설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마음을 달리 먹어 상황을 개선할 줄 알아야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즐겁게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면 짜증나던 일도 새롭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서점가에서 판매되는 베스트셀러에는 자기계발 및 성공스토리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 속에 소개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이들이 명확한 목표, 치밀한 계획, 그리고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도전했다는 점입니다. 제대로 된 인생설계나 명확한 목표없이 하루 하루를 바쁜듯이 살지만 정작 실속이 없는 사람들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데일카네기(Dale Carnegie)¹의 말처럼 '명확한 목표는 성공으로 가는 출발점이자, 나침반'입니다. 목표를 세우게 되면 기업으로서 노력해야 할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립심, 진취력, 상상력, 열정 등은 모두 목표에서 나옵니다.

화려한 삶을 꿈꾸는 사람도 있고, 내면적인 삶을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목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현재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일, 궁극적으로 내가 되고 싶은 모습 등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주변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어야 명확한 목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신판례예규

「민법」 제32조에 따라 2018.3.2.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2019.9.30.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법인에게 2019.1.1.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령법인-1200, 2020.03.2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출연재산가액은 당해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서면상속증여-1691, 2020.02.28

질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설립되었으나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를 받지 못한 장학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출한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호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2018.3.2.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2019.9.30.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법인에게 2019.1.1.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사실관계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보유한 부동산(대출 포함)을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에 기부하고자 함
질의내용
- 증여세 및 대출 이전에 따른 과세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임 기존 해석사례 상 속증여-2758(2018.10.17), 재산상속46014-41(2000.0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2758, 2018.10.17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재산상속46014-41, 2000.01.13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가 성립하는 것이며, 개인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의료기관의 전재산을 무상으로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같은 법 제

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재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공개입찰방식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이후 시가의 변동을 초래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사전법령법인-110, 2020.02.27

| 질의

- 사원주주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는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할 경우 적용할 해당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 성과급 지급 전 사원들과 계속 · 반복적으로 거래한 가격 및 외부 주주로부터 공개입찰방식으로 취득한 매입가격인 액면가액을 해당 자기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사원주주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는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사원들에게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함에 있어서 해당 성과급 지급 전에 사원들과 계속 · 반복적으로 자기주식을 액면가액에 거래하였으며, 공개입찰 방식에 의하여 사원주주가 아닌 외부주주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개입찰 방식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성과급 지급일까지 시가의 변동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액면가액을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Marketing Tax consulting

상거래관행에 위반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용료수료는 지주회사와 소속 기업집단간이라도 시가로 인정됨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산정 시 일률적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이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제과-326, 2020.03.24

| 질의

상표권(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시가 산정기준

| 회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 2호에 따른 지주회사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내부거래가 제외되지 않은 총매출액에 일정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상표권(브랜드) 사용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유로서, 동 수수료 산정 방식이 다른 제3의 지주회사들과 그 소속 기업집단 간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적용되었고,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되는 것이며,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산정 시 일률적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이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장점뉴스 요약

올해 끝나는 '벤처투자 세제지원', 3년 연장 추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창업 투자 세제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전했다.

현행법은 민간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출자·투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제지원의 대부분은 올해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

김 의원은 벤처기업 등의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종료될 경우, 이들을 위한 투자가 줄어 벤처기업들이 연구·기술개발 과정을 지속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혁신적인 산업환경 구축과 기술개발 및 고용효과 창출에 기여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벤처기업의 성장은 현재 진행중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업동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 관세 납세자, 신용카드 납부 가능… 유니파스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

관세청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유니파스에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 납부액 중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세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7년에는 1874억원, 18년에는 2492억원, 그리고 19년에는 289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납세자가 보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추세다.

개인무역의 보편화로 관세를 납부하는 일이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요즘, 이번 간편결제 서비스 시행으로 개인 납세절차가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이에 개인 납세자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유효 기간 입력,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관세법 개정안(모바일 고지 법적 근거)이 금년말 통과되면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와 간편결제 서비스가 연계되면 모바일에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고, 간편결제로 납부하는 한층 편리한 납부 서비스가 구현될 것으로 내다봤다.

1600cc 이하 승용차 개소세 면제 추진

아반떼, K3 등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해 개별 소비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을 그 물품가격의 5%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배기량이 16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는 소형 또는 준중형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주로 서민들이 실질적 필요에 의해 구입하는 차량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

이 의원은 소형·준중형차의 소득 탄력성(소득이 1% 증가했을 때 수요가 몇 %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은 0~1 사이이며, 대개 소득 탄력성이 0~1 사이인 재화는 필수재로 분류돼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기량이 16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사치 품이라 보기 힘든 소형차와 준중형차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은 세법이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세청, 2020. 9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5개 법률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행정경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입법예고 : 8.12. ~ 9.1. (지방행정경제재·부과금법 8.7.~ 8.27.)

-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역경제 재도약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 먼저, ①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수산업의 소비급감과 경제여건 악화를 고려하여, 농·어업 및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연장,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②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 고가 수입품 등을 국내 반입할 경우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 또한, ③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통지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세무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도 강화한다.

- ④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주민세 과세체계를 사실상 5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 를 7월과 8월에서 8월로 통일하는 등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 5개 :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개정) 3개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 마지막으로, ⑤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도록 하고, 관허사업제한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관리 효율성을 제고한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환급금 발생시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
** (기존) 3회 + 1년 경과 + 100만원 이상 체납시 → 3회 + 1년 경과 + 30만원 이상 체납시
- 행정안전부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재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 한다.” 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구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 지방세 관계법률* 주요 개정내용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 방향

◇ 코로나19 피해 극복, 사회안전망·공정 강화 및 과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신기술 지원,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 등에 중점

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 농·어업분야 감면연장 및 재설계
- 중소기업 지원분야 감면 연장
-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연장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신설
- R&D차량 등 미등록 차량 취득세율 명확화
-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원

2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시설 감면 연장
- 노인복지시설 감면 연장
- 국가유공자 대상 감면 연장

공정사회 구현

- 호화생활 상습·고액 체납자 관리 강화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확대

3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 보호

과세제도 합리화

-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 개선
-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 합리화

납세자 권익 보호

-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가산세·가산금 일원화
- 세무조사 등의 결과통지 기간 명확화 및 합리화

1.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① (연장·재설계) 농어업 분야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1,393억원

- 코로나19에 따른 농·수산업 소비 급감 등 경제여건 악화 추세를 고려하여 농·어업 분야의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자경농민, 농·어업법인, 임업 후계자 등 11건

구분	현 행	개 정
자경농민	농지·임야 농업용 시설	취득세 50%
농업법인	설립 2년내 취득	취득세 75%
농·어업 법인	영농·유통·가공 목적	취득세·재산세 50%

⇒ 감면 연장

② (연장)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 연장 : 56억원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된 점을 고려, 중소기업 관련 지방세 감면은 현행 감면을 연장

※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 11건

구분	현 행			개 정
벤처기업 집적시설	시행자 입주기업	취득세·재산세 50%	취득세·재산세 등 중과배제	감면 연장
창업 보육센터	시행자 입주기업	학교 외 학교	취득세 75%, 재산세 50% 취득세 75%, 재산세 100% 취득세·재산세 등 중과배제	⇒ 감면 연장

③ (연장) 개인지방소득세 공제 · 감면 연장 : 1.4조원

-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등)

지원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수준*으로 1년 연장

* 소득세 세액공제 · 감면액의 10%를 일괄 감면(지특법 제167조의2)

④ (연장) 서민금융기관 감면 연장 : 500억원

- 산지유통 등 농 · 어업인 사업의 지속 지원을 위해 감면 연장

구분	현 행		개 정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구매 · 판매사업 고유업무	취득세 · 재산세 25%	⇒ 감면 연장
신협 ·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복지 · 교육사업	취득세 · 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최소납부세제) 감면액이 취득세 200만원 · 재산세 50만원 이상인 경우 감면액의 15%
부과

⑤ (연장 · 재설계) 창업중소기업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767억원

- 창업 초기 이익을 유보하여 기업의 조기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인하도록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창업요건 명확화, 감면이 인정되는 창업업종 확대 및 분류체계 정비

구분	현 행	개 정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 75% 재산세 100%(3년), 50%(2년) 등록면허세 100%	⇒ 감면 연장 * 등록면허세 감면 제외

2.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① (신설)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신설 : 20억원

-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을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5G 무선국 신규 구축 시 등록면허세 50% 감면 신설

구분	현 행	개 정
5G 무선국 (과밀억제권역 외)	〈 신 설 〉	등록면허세 50%

② R&D차량 등 미등록 차량 취득세율 명확화

- 실험·연구용 차량 등*의 취득세율 명확화(2%)로 연구·개발 지원
- *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용 차량, 자율주행 연구·개발용 차량, 전기차 등 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보급용 차량 등

구분	현 행	개 정
비영업용 차량의 취득세율	(승 용 차) 7% (경 차) 4% (화 물 차) 5% (미등록 차량) 4~7%(상동)	〈자 동〉 (미등록 차량) 2%

③ (신설)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원 : 26억원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및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공공
직업훈련시설의 취득세·재산세(50%) 감면 신설

구분	현 행	개 정
공공직업훈련시설	〈 신 설 〉	취득세·재산세 50%

3.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① (연장)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시설 관련 감면 연장 : 9억원

-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복지 제공,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
등을 위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구분	현 행	개 정
지역아동센터	취득세·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청소년단체	취득세 75%, 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면 연장
청소년수련시설	취득세 100%, 재산세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② (연장) 노인복지시설 감면 연장 : 341억원

- 노인복지 인력·시설 등 투자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구분	현 행	개 정
무료시설	일반 취득세 100%, 재산세 50% 경로당 취득세·재산세 등 100%	
유료시설	취득세·재산세 25%	↳ 감면 연장

③ (연장) 국가유공자 대상 감면 연장 : 58억원

- 국가에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하여 감면 연장

구분	현 행	개 정
대부금 부동산	취득세 100%	
유공자 단체	취득세·재산세 등 100%	↳ 감면 연장
자활용사촌	취득세·재산세 등 100%	

4. 조세정의 확립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

① 호화생활 상습·고액체납자 관리 강화

-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 근거 마련
- 각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징수법상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실효성 확보
- * (광역 내 합산 시)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기초지자체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제재 수행(광역

간 합산 시) 광역 간 분산체납액 존재 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장이 합산 제재

구분	현 행	개 정
체납자 A씨 (총체납액 1천2백만원) 서울 8백만원 부산 4백만원	명단공개 불가 (지자체별 1천만원 이상 기준)	명단공개 가능 (전국 합산 1천만원 이상)

- 고액 · 상습체납자 수입품 체납처분 권한 위탁 ※ 국세 일치
- 고액 · 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 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 마련
 - * 체납발생 1년 경과, 체납액 1천만원 이상(지방세징수법 § 11①)

구분	현 행	개 정
고액 · 상습체납자 체납징수 수단	수입품(동산)의 경우 통관단계 미압류시 체납처분 사각 발생	체납처분 위탁 근거 마련 ※ (지자체장 → 세관장) 고액 · 상습체납자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 가능

- 명의신탁된 종중재산 물적납세의무 부여 규정 신설
 - 종중에 체납발생 시 종중 외의 자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이 있을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 부여 근거 신설
 - ※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재산이더라도, 실 소유자는 종중이므로 수탁자 명의의 재산에도 납세의무 부여

- ②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확대 ※ 국세 일치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수령 시 납세의무 승계 규정 신설
 - ※ 재산을 우회적으로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조세회피 발생 가능

5. 불합리한 과세제도 합리화

- ①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 개선
 - (현행) 세액공제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함에 따라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문제
 - ⇒ (개정)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 ※ 납부한 세금을 소득으로 산입하여 과세하는 불합리 해소(대법원 판례에 부합)

〈 과년도 외국납부세액 환급처리 방향 〉

- ▶ 지방세법 개정안 부칙에 '14년 이후 외국납부세액 소급 환급 근거 마련
- ▶ 법 시행 전이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환급처리 관련 지침」에 따라 신속히 환급하도록 각 지자체에 안내(8.11.)

②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 담배 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을 니코틴 용액 1ml당 628원 → 1,256원으로 조정

구분	현 행	개 정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1ml당 628원* * 1.6ml당 1,007원 ※ 궐련담배 1갑(20개비)당 1,007원	니코틴 용액1ml당 1,256원* * 0.8ml당 1,007원

③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조정

-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 등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를 추가하여 신종 담배에 대한 과세 근거 마련

구분	현 행	개 정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사업법」상 담배* * 연초의 「잎」이 원료인 경우로 한정	「담배사업법」상 담배 +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유사한 것* * 연초의 「뿌리·줄기」 등을 원료로 제조한 것 등

6. 납세자 권리 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①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 사실상 5개로 구성된 현행 세세목을 3개로 대폭 단순화*하고, 개별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 간소화
 - *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 또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재산분의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명확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수용성 제고
 - * 균등분 8월, 재산분 7월 → 개인분·사업소분 8월

현 행			개 정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균등분 (8월)	개인	1만원 内	개인분(8월)	사업소분 (8월)	〈좌 동〉
	개인사업자	5만원			기본세액(5만원*) +
	법인	5~50만원			사업장 연면적 × 250원/m ²
재산분 (7월)	사업자	사업장 연면적 × 250원/m ²	종업원분 (매월)	사업자	〈좌 동〉
종업원분 (매월)	사업자	월급여총액 × 0.5%			

* 다만, 법인 기본세액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20만원 차등(기존 법인균등분 단순화)

②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가산세 · 가산금 일원화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구분	현 행	개 정
법정기한 불이행 시 가산세·가산금 부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 가산금 (1회 3%) 증가산금 (매월 0.75%)	납부지연가산세 ※ 납세자 세 부담 증가없이 통합하기 위해 산정방식 유지(일할+월할)

③ 세무조사 등의 결과통지 기간 명확화 및 합리화 ※ 국세 일치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결과통지 기한(20일) 신설

구분	현 행	개 정
세무조사 결과통지	결과통지 기한 없음 ※ 다만, 지자체 규칙으로 세무조사 결과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통지	조사 종료 20일 이내 ※ 외국과세기관과 협의 등 사유 발생 시 해당 부분은 그 해 소일부터 20일 이내



II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주요 개정내용

1 체납처분수단 확보를 통한 체납처분의 실효성 강화

① (신설) 압류의 효력 연장 등

-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후에 소유권 이전 전 납기가 도래한 체 납액에 대하여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
※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추가로 확정 · 고지될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압류목적물을 양도할 가능성 차단
- 체납자의 계속 수입*을 압류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 수입할 금액까지 그 압 류의 효력을 가지도록 명확화
 - * (대상) 급여, 봉급, 임금, 세비, 퇴직급여 등

② (신설)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환급금의 충당

-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체납자에게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③ (신설)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수색의 권한과 방법

-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종류 · 규 모)을 수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지방세나 개별법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라는 정수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색권이 인정되나,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경우 근거가 없는 상태

2 간접강제제도 강화를 통한 체납징수율 제고

① (개정)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근거 명확화

- 지자체별 1천만원 기준으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나, 시 · 도지사의 경우 관할 기초 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공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예를 들어, 용인시 5백만원, 수원시 6백만원 체납이 있는 경우 경기도지사가 공개

② (개정) 관허사업제한 대상 확대

- 기준 금액을 지방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하향(100→30만원)

구분	현 행	개 정
기준	3호이상, 1년경과, 100만원이상 해당사업	3호이상, 1년경과, 30만원 이상 해당사업
제한 요건		
제한 범위		

- ③ (신설) 법무부에 외국인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체납자료 제공
 ○ 법무부에 외국인 체납자료를 제공하여 체납 시 체류연장 심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3 체납처분 행정 효율화

- ① (신설) 부동산 압류 · 압류해제 등기수수료 면제
 ○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부동산 압류 · 압류 해제 등기수수료 면제
 ※ 국세 · 지방세 또는 국세외수입은 법령 · 규칙에 따라 면제(지방세는 '18.1.1일 시행)
- ② (개정) 멸실인정 자동차 압류해제의 요건 추가
 ○ 재산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해제 할 수 있도록 규정
 * 「자동차관리법」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 ③ (개정) 지방세외수입 운영분석 · 진단 전문기관 수행, 출연근거 마련
 ○ (사업) 전문기관(지방세연구원) 지정을 통한 분석 · 진단 사업 추진
 ○ (예산)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사업 수행기관에의 출연근거 마련

주택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 국세청, 2020. 9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최근 주택관련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궁금증을 보다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 부동산 3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 등 주요 개정내용
 - 100問100答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 도움자료는 검색 편의기능*을 담아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시스템에 게재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

- 최근 부동산 3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함) 등 주택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 *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
- 부동산 3법 및 민특법 상 임대주택 관련 보완조치 등의 주요 개정내용*, 적용시기 등을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도표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율, 종합부동산세율, 취득세율 등

2 100問100答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 또한, 국세청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평소 국민들과 세무대리인들이 궁금해 하시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100問 100答 형식으로 정리하여
-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 또는 홈택스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며, 한글파일을 내려받아 검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 www.nts.go.kr → 화면 중앙하단 → 「주택세금 100問100答」
 - * www.hometax.go.kr → 화면 좌측하단 → 「주택세금 100問100答」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양도소득세 상담	국번 없이 ☎ 126 (2번 선택 후 1번)
	종합부동산세 상담	국번 없이 ☎ 126 (2번 선택 후 4번)
	주택임대소득세 상담	국번 없이 ☎ 126 (2번 선택 후 6번)
	법인세 상담	국번 없이 ☎ 126 (2번 선택 후 6번)
지방세상담	취득세 상담	각 지방자체단체 세무과

1 -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 이후 취득분부터)
 -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인 경우 8%적용

-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21.6.1. 이후 양도분부터)
 -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구분		현 행			개 정		
		주택 외 부동산	주택 · 입주권	분양권	주택 · 입주권	분양권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50 %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21.6.1. 이후 양도분부터)

-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2 -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

● 개인 · 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1년 귀속분부터)

-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0.6		0.6%	1.2	
3~6억원	0.7%	0.8		0.9%	1.6	
6~12억원	1.0%	1.2	3%	1.3%	2.2	6%
12~50억원	1.4%	1.6		1.8%	3.6	
50~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 세부담 상한 인상('21년 귀속분부터)

-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구 分	현 행 (개인·법인 동일)	개 정	
		개 인	법 인
일반 1·2주택	150%	150%	폐 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00%	
3주택 이상	300%	300%	

●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21년 귀속분부터)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 원) 폐지
-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 * '20.6.18.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21년 귀속분부터)

-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연령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공제한도
	현행	개정	보유기간	공제율	
60~65세	10%	20%	5~10년	20%	70% → 8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3 - 법인세법 주요 개정내용

●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21.1.1. 양도분부터)

-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10% → 20%로 인상
 - 추가세율 적용대상을 기존 주택 및 별장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추가
 -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 임대기간 8년 이상, 주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4 -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로 인상
 -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처분기간* 내 종전주택 미처분시 차액 추징)
 - * 3년 이내(신규 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이내)
- (법인) 개인을 제외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 적용 세율 >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 일시적 2주택 제외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중과제외주택)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
 -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주택 시공자의 대물변제(미분양)주택, 사원임대용 주택 등
- (사치성재산) 중과대상인 고급주택 · 별장 취득시 세율 8% 가산

● 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강화

-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가액(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세율 12%로 인상
 - *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은 제외

5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

● 개정내용 :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 폐지('20.8.18.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주택 구분	유형별 폐지·유지 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단기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폐지	폐지
장기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유지 (아파트는 폐지)	유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유지	유지

- 임대주택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 말소
- 다만, 보완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적용

● 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법인세 관련 보완조치

- 임대등록일부터 자진 · 자동말소일까지 세제혜택 유지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단기, 아파트 장기)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혜택* 유지

- * 소득세 :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
- 법인세, 소득세 :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감면(30%, 75%)
- 종합부동산세 : 합산배제 적용

- 자진 · 자동등록 말소하는 경우 추징 면제
 - 의무임대기간 경과하기 전에 자진 · 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 세법상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 * 예)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관련 보완조치

※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만
다음의 보완조치 적용

-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자진 · 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 (현행제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 · 자동등록말소 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음
-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 자진 · 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 * (현행제도) 임대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 및 법인세 추가세율(+10%p) 적용 제외(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 배제

● '20.7.11. 이후 임대등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배제

- 7.11일 이후 ①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②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 배제
- 따라서 동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보완조치의 내용도 적용되지 않음



9가지 주요 상담사례

1 양도소득세 관련

1.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함

3.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 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함
 - 1년 미만 보유시 : 70%
 - 1년 이상 보유시 : 60%

22. 1주택자가 '19.12.17.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신규 주택에 전입하였으나,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 '19.12.17. 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전입 요건과 중복보유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 해야 적용됨
- 신규 주택에 전입은 하였으나 기존 주택을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음
 - * 2주택자 기본세율+10%p, 3주택 이상자 기본세율+20%p 가산

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에는 세제혜택이 가능한지?

-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5% 상한 등 임대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가능 함

2 종합부동산세 관련

1.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20.9.1. 주택 1호가 조정대상지역에 서 해제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는지?

- 조정대상지역 판정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20년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며, '21년 귀속분 부과 시에는 일반 2주택자에 해당함

5. '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지?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단일세율 3% 또는 단일세율 6%가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21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음

8.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5%)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향후 계속하여 합산배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지?

-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총 2년)에 대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4 주택임대소득세 관련

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2)임
 - 1)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
 - 2) 주거전용면적이 $40m^2$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1년까지 제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기준>

주택수*	과세대상(○)	과세대상(✗)
1주택 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국내주택의 월세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국내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월세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가 3억 원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 주택 3채 미만 소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 주택 보증금·전세금 합계가 3억 원 이하

* 주택수는 부부합산 소유주택수 기준임

16.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방법은?

-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상장회사의 위반사례로 보는 『회계부정 예방을 위한 Check Point』 안내

- 금융감독원, 2020. 9

I 개요

- 잇따른 대형 회계부정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 거래소의 시장조치 회피 및 대표이사의 횡령 은폐 등 다양한 목적으로 경영진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상장회사 등의 회계부정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
 - 회계부정이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등 강화된 조치로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주주 등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 최근 외부감사법 상 한층 강화된 제반 제도*의 도입으로 향후에는 외부감사인, 내부감사의 점검 및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회계부정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 주기적지정제 등 감사인지정 대상 확대,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
- ⇒ 이에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인 및 내부감사조직이 내실 있는 점검 및 감시 기능을 하는 데 참고하도록
최근 2년간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회계부정사례(10개 상장사)를 분석하여, 회계부정 예방을 위한 Check Point로 안내

II 회계부정 사례 및 예방 Check Point

1 매출 허위계상



(사례1) 신사업 실적 부풀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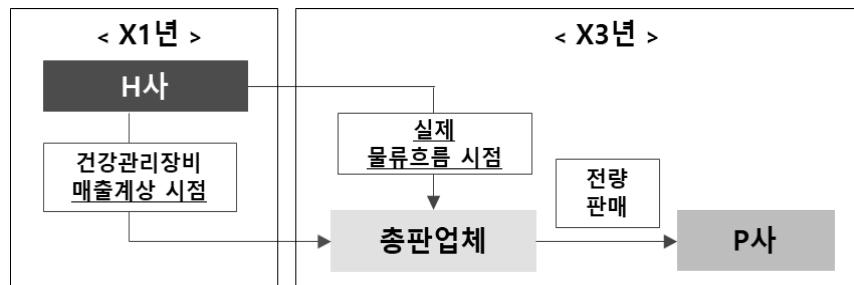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정황

- ◆ 신제품의 최초 생산물량이 전부 판매되었다는 언론 기사
- ◆ 신제품 개발 즉시 총판업체에 대량 판매

사실관계

- ▣ (회사상황) H사는 X1년 7월 언론을 통하여 회사가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하였고, 신규 개발한 건강관리장비의 최초 생산물량이 전부 판매되었다고 홍보
 - 언론 기사와 다르게 H사의 건강관리장비는 시제품에서 계속 불량이 발생*하여 X2년 말까지 납품이 안 되었음
 - * H사는 동 장비를 OEM 방식으로 타 업체에 제조를 의뢰
 - X3년 2월 총판업체에 납품하였으나, 총판업체는 H사로부터 제공받은 장비를 X3년 6월 P사에 전량 판매
- ▣ (회계부정) H사는 X1년에 실제로 납품하지 않은 건강관리장비에 대한 매출을 허위계상하고, X2년까지 매출채권을 허위계상

〈사실관계〉



점검 필요사항

- (내부감사 · 외부감사인) 신제품의 실제 제조현황, 운송여부, 시장의 판매현황 등을 확인하여 매출 계상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사례2) 관리종목지정 회피를 위한 매출 허위계상 및 비용 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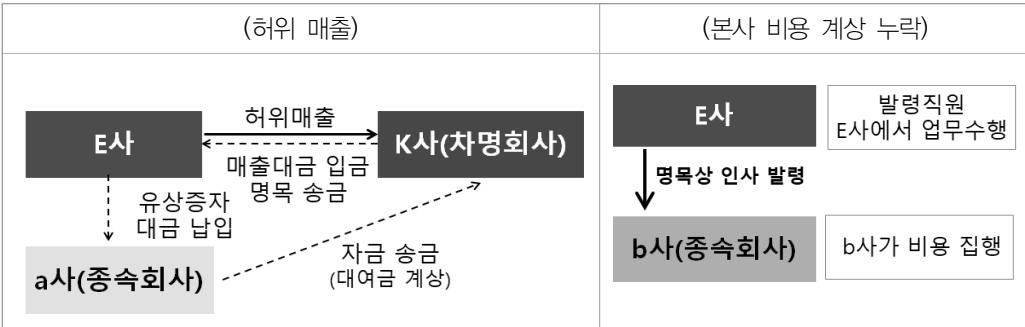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정황

- ◆ 신규거래처 매출이 발생하고 별도재무제표 상 영업흑자로 전환
- ◆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본사소속 직원을 종속회사로 서류상 발령
- ◆ 연결재무제표는 영업적자인데 별도재무제표는 흑자
- ◆ 별도재무제표 상 거액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영업손익은 흑자

사실관계

▣ (회사상황) 코스닥상장회사 E사는 4년 연속 별도재무제표 상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으므로, 별도재무제표의 영업손익을 조작하기로 계획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① 3의2.

▣ (회계부정) E사는 차명회사(K사)에 대해 허위매출을 계상하고, 허위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종속회사(a사)를 통해 K사에 자금을 송금(대여금 계상)하고 매출채권 상환 명목으로 회수
• 본사직원을 종속회사(b사)에 허위 인사발령하여 인건비를 조작(E사 과소계상, b종속회사 과대계상)하는 등 별도재무제표 영업손익을 조작



※ E사는 이후 상장폐지

점검 필요사항

- (내부감사 · 외부감사인) ① 신규매출 및 거래처 관련사항, ② 인건비 운영 및 집행과 관련한 적정성, ③ 종속회사 증자대금 사용현황 등 점검 필요
- (정보이용자) 별도재무제표 상 영업손익이 타당한 근거도 없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회계부정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



(사례3) 매출실적 평가 관련 영업부서의 허위 매출·매입 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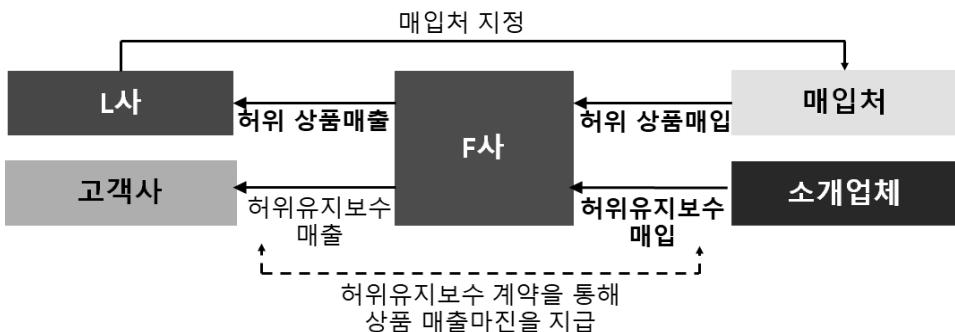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정황

- ◆ 회사 차원의 공격적인 영업(목표치 대폭 상향) 및 무리한 성과 평가
- ◆ 특정기간(예시: 4/4분기)에 매출 실적 편증

사실관계

- ▣ (회사상황) F사는 기존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영업판로 개척이 절실
 - 회사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하여 매출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함으로써 영업담당 임원이 실적달성을 압박에 노출
- ▣ (회계부정) F사의 OO사업부문은 L사로부터 상품거래에 끼어들 기회를 소개받은 후 L사가 매입처를 지정하여 상품주문을 하면, 매입처를 통해 상품 매입 후 L사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매출·매출원가를 허위계상
 - 허위 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소개업체에 돌려주기 위하여 허위의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외주비용을 지급

〈회계부정 수법〉



점검 필요사항

- (내부감사·외부감사인) 사업부문별·기간별 매출실적, 거래처별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이사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

2 자산 허위계상

(사례1) 매출채권 허위계상 (임직원 횡령 의심거래)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정황

- ◆ 회사자금이 재무담당임원 등 임직원 개인계좌에 입금
- ◆ 일부 거래처의 경우 매출 증가액보다 매출채권 증가액이 큼
- ◆ 장기간 회계·자금업무를 분리하지 않고 동일인이 수행

사실관계

- ▣ (회사상황) C사는 X1~X2년 중 수십 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OO억원을 회사 임직원 명의 (강이사 및 나과장) 계좌에 입금
 - 강이사와 나과장은 장기간 회사의 회계·자금업무를 동시에 수행
 - * 강이사 단독으로 회사 실물어음 관리, 법인인감 사용 가능 등
- ▣ (회계부정) 회사자금을 유출(횡령 의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특정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이 증가한 것으로 허위계상
 - X3~X5년에는 대손충당금 설정을 회피하기 위해 채권회수가 전혀 없는 거래처로부터 채권이 회수된 것처럼 회계기록 조작
 - 거래처별 매출채권 잔액을 조작한 후 결산명세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시

<사실관계>

C사

X1~X2년 중 수십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송금

강이사, 나과장

자금유출 상대계정으로
매출채권 허위계상

甲사 등

- 1) 대손충당금 설정 회피를 위한 채권회수 관련 회계기록 조작
- 2) 거래처별 매출채권 잔액을 조작하여 결산명세서 작성
- 3) 허위의 주소로 채권·채무조회서 발송 및 공모자를 통한 외부감사 대응

점검 필요사항

- (내부감사 · 외부감사인) ① 자금·회계업무 분리 여부, ② 자금관리 관련 내부통제절차의 적정성, ③ 매출·매출채권 회계처리 프로세스 적정성 등 점검 필요
- (정보이용자) 내부통제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또는 감사)의견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



(사례2) 선금금 허위계상 등 (대표이사 횡령 거래)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정황

- ◆ 회사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빈번하게 변경됨
- ◆ 사모 유상증자, CB발행 빈번 등
- ◆ 자금조달 후 대여금, 선금금 등의 규모가 대폭 증가
- ◆ 대표이사가 특정 은행계좌를 단독관리하며 회사자금을 임의 사용
- ◆ 이사회의사록에 날인하는 이사·감사의 도장을 대표이사가 관리

사실관계

- ▣ (회사상황) D사는 X1년 10월 사모 유상증자·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총 300억원을 조달*하고, X2년 2월 이모씨가 대표이사로 취임
* 동일시점에 최대주주 변경
 - X2년 2월~6월 중 대표이사가 증빙없이 자금을 부당 인출하거나, 신설투자자문사에 거액을 대여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빈번

〈사실관계〉

자금조달(X1년 10월)

사모 유상증자·CB발행 등으로 자금조달
(최대주주 변경)

D사

X2년 2월 이모씨가 대표이사로 취임

자금 부당 집행(X2년 2~6월)

X2년 2월~6월 중 대표이사의 증빙없는 자금인출,
신설투자자문사에 거액의 자금 대여

※ D사는 이후 상장폐지

- ▣ (회계부정) D사는 대표이사가 부당인출한 자금과 관련하여 선금금을 허위계상하고, 주석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 기재를 누락

점검 필요사항

- (내부감사·외부감사인) ① 자금·회계업무 분리 여부, ② 자금관리 관련 내부통제절차의 적정성, ③ 부당거래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점검 필요
- (정보이용자) ① 최대주주의 빈번한 변경, ② 무자본M&A 의심거래, ③ 빈번한 증자 및 CB·BW 발행 회사에 대하여는 투자에 유의할 필요

(사례3) 유형자산 허위계상 (유상증자 가장납입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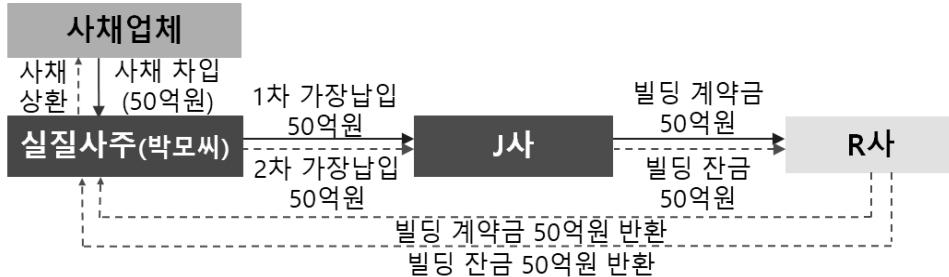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정황

- ◆ 완전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가 우려되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
- ◆ 유상증자 직후 거액의 유형자산(건물) 취득계약 체결
- ◆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장기간 취득세 미납(사용가능한 건물을 장기간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

사실관계

- ▣ (회사상황) J사는 X1년말 완전자본잠식 예상으로 상장폐지가 우려되자 X1년말 2회에 걸쳐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50억원씩 총 100억원)
- 회사 실질사주인 박모씨는 사채업체로부터 50억원을 차입하여 1차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고, R사와 R사 소유의 빌딩을 200억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
 - * 대금지급 100억원(계약금 50억원, 잔금 50억원), 채무인수금액 100억원
 - J사는 계약금 지급 명목으로 50억원을 R사에 송금, R사는 이를 박모씨에게 반환하였고, 박모씨는 이를 2차 증자대금으로 납입
 - J사는 빌딩매입 잔금 지급명목으로 50억원을 R사에 송금, R사는 이를 박모씨에게 반환, 박모씨는 사채업체 차입금 50억원 상환

〈회사의 가장납입 및 허위 건물 매매계약 자금흐름도〉



- ▣ (회계부정) J사는 허위매입 빌딩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X2년까지 건설중인자산으로 100억원 허위계상

점검 필요사항

- (내부감사 · 외부감사인) ①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대상자 및 자금출처 등을 살펴보고, ② 증자대금 사용 관련 유형자산 취득 등 거래의 실재성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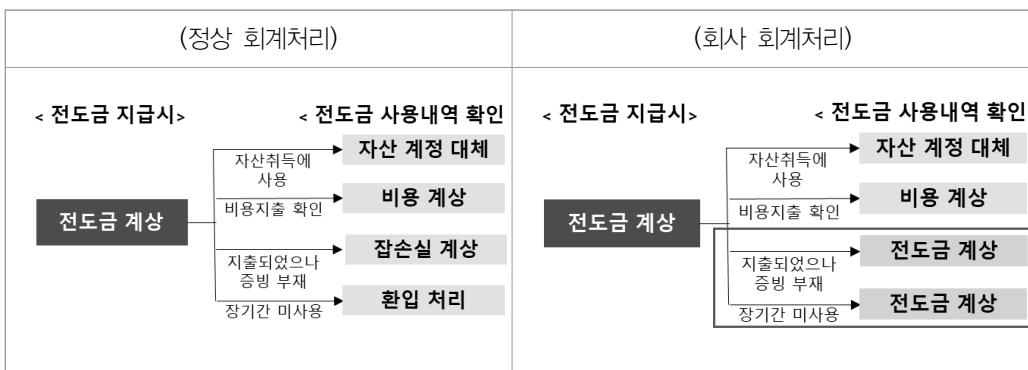
(사례4) 선급금(전도금) 과대계상 (임직원의 횡령 의심거래)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정황

- ◆ 장기간 임원·지점 전도금으로 계상된 금액 존재
- ◆ 전도금 계상 후 장기간이 소요되었음에도 지출증빙이 없음

사실관계

- ▣ (회사상황) I사는 X1~X2년 사이에 비교적 큰 금액을 가계정 성격인 임원 및 지점 전도금(선급금의 하위 항목)으로 계상
 - 상기 전도금은 X7년까지 본계정으로 대체되지 않고, 세부 증빙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음
- ▣ (회계부정) 가계정 성격인 전도금*의 사용현황이 일정기간 확인되지 않는다면, 수취자에게 회사에 다시 반환토록하거나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손실 처리하여야 함에도
 - * 미리 지급하여 주는 돈(前渡金, money paid in advance)
 - I사는 이를 정리하지 않아 장기간 선급금을 과대계상



점검 필요사항

- (내부감사) 가계정의 경우 결산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계정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증빙이 확인되지 않고 반환이 불투명한 경우 손실 처리하고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
- (외부감사인) 내부통제절차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동 결과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또는 감사)의견 등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

3 기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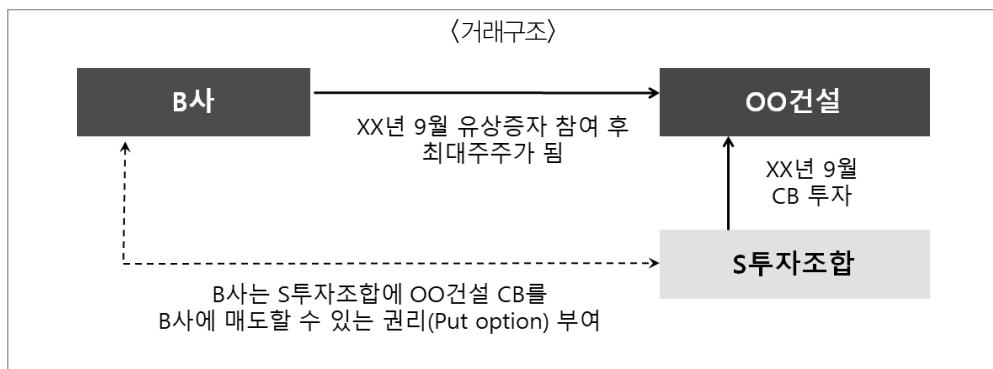
(사례1) M&A 관련 약정 은폐에 따른 파생금융부채 누락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정황

- ◆ 회사가 인수한 상장사가 인수 당시 조기상환청구권이 없는 전환사채를 발행
- ◆ 대표이사가 법인인감을 사용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

사실관계

- ▣ (회사상황) B사는 사업과 관련한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OO건설을 인수하기로 결정
- OO건설은 당시 거액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였는데, 회생종결 승인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투자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고,
 - 그 대신 B사 대표이사는 투자자가 CB를 B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B사와 S투자조합은 OO건설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 ▣ (회계부정) B사의 대표이사가 S투자조합에 부여한 풋옵션 존재사실을 은폐함으로써, B사는 계상해야 하는 파생금융부채 회계처리를 누락
- B사의 대표이사는 피투자회사(OO건설) 회생절차*가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CB투자자가 회사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은폐
 - * OO건설은 XX년 10월 회생절차 종결

점검 필요사항

- (내부감사 · 외부감사인) ① M&A 관련 약정사항 유무, ② 법인인감 사용 및 기록 관련 통제절차의 적정성 여부, ③ 피투자회사 발행 CB에 조기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 이면약정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



(사례2) 종속기업 영업손익 과소계상 (단가입하 압력 회피)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정황

- ◆ 종속회사의 매출은 크게 늘었는데 영업손익은 감소
- ◆ 매출원가가 4/4분기에 편중되어 크게 증가

사실관계

- (회사상황) G사는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이며, 거래처로부터 정기적·부정기적으로 단가입하 압력을 받음
 - 해외현지 종속회사의 수익성 높은 특정부품의 공급물량 증가로 동 종속회사의 영업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동사는 본사와 합의하여 영업이익을 조정하기로 모의
- (회계부정) 매출액 중 일부를 임의로 차감하고, 4분기 재료비 등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과소계상

〈종속회사 재무제표〉

(정상 회계처리)

(회계부정 後)

매출 (1,000억원)	매출원가, 판관비 (700억원)	50억원 과소계상	150억원 과대계상
영업이익 (300억원)		매출 (950억원)	매출원가, 판관비 (850억원)
			영업이익(100억원)

점검 필요사항

- (내부감사·외부감사인) ① 연결조정 회계처리 적정성, ② 해외현지법인의 K-IFRS기준 재무제표 전환 결산조정사항의 적정성, ③ 기간별 매출 및 매출원가 계상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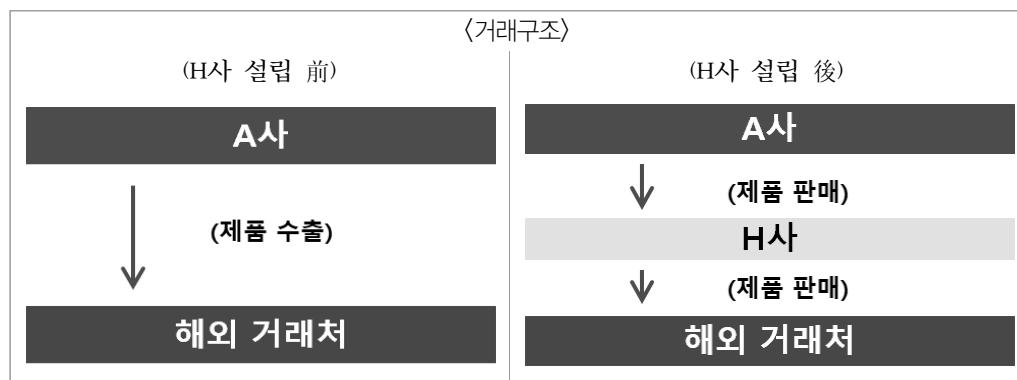
(사례3) 차명 보유를 통한 해외종속기업 누락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정황

- ◆ 회사와 수출거래처 사이의 거래에 중간거래처를 추가

사실관계

▣ (회사상황) A사는 해외 거래처에 대하여 직접 제품을 수출하다가, 중간에 홍콩소재 H사를 개입시켜 3자 중계무역으로 거래방식을 변경



▣ (회계부정) 실제로 H사는 A사가 지배하는 종속회사로, H사를 종속회사에 포함하여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별도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하여야 하나, A사는 H사와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인 것처럼 회계처리

- A사는 H사를 차명으로 설립하였고, H사는 상주 직원 및 상설 사무실이 없어서 설립대행사가 제공하는 사무실 임차서비스 등을 필요시 이용하였으며 A사가 실질적으로 운영

점검 필요사항

- (내부감사 · 외부감사인) 회사의 거래구조 변경시 회사와 신설회사와의 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여 연결대상, 특수관계자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



III

기타 안내사항

1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철저한 준수

- 회사 및 임직원은 거래내역 및 자산상태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 감사인은 형식적 감사절차에 의존하지 말고,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특이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강화된 조치기준

- ◆ 과징금 부과금액 및 부과대상 확대
 - 고의적인 회계기준 위반 적발시 회사 등에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동 회계부정에 관여한 회사관계자 모두에게도 과징금 부과 가능**
 - * 회사: 위반금액의 20%, 감사인: 감사보수의 5배까지 부과 가능
 - ** 이외 검찰고발·통보 등 조치 가능
 - 중대한 감사부실이 확인된 감사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 ◆ 회사의 고의적인 회계기준 위반 적발시, 임원 및 감사(감사위원회)에 대한 해임권고시 직무정지(6월 이내) 병과 가능

2 부정행위 등의 보고 의무 (외감법 522)의 충실히 이행

-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부정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조사** 실시 필요
 - * 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 제보 등을 통해 회계부정의 존재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 면담 등 추가적인 확인절차 후에도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
 - **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
- 감사인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 관련 부정행위 또는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사실 발견시 신속하게 상호 공유하고 주주총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할 필요

3 회계부정행위 인지시 적극 신고

- 임직원 및 거래처 등은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등에 신속히 신고할 필요
 - 신고사항이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기여도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지급한도 10억원)
 - 비자발적으로 회계부정에 가담한 임직원이 신고하는 경우, 부정행위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

고 적시에 시정되는데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면 동 임직원에 대한 조치 감면

회계부정행위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만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8월말 기준)
지급건수	2건	2건	1건	2건	12건
지급금액	2,740	3,610	330	11,940	40,840

- ◆ 지속적인 회계부정신고 및 포상 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로 최근 회계부정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고의적인 회계부정 적발사례도 증가

* 익명신고제도 도입 ('20. 3.), 포상금 지급대상에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부정 신고 포함 ('20. 5.)

4 투자자 등의 신중한 공시정보 확인

- 투자자 등도 한계기업(영업적자, 자본잠식 등) 해당 여부, 잦은 최대주주 변경 및 사모 유상증자 · CB발행 등 특이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 회계부정 징후 유 · 무를 검토하는 등 공시된 재무정보를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

참고 - 회계부정 신고방법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1 신고대상

-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한 행위 등 외감법에서 정한 회사 및 감사인의 회계부정행위(외감법 제28조 제1항)
(회계부정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8①))

-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정보 작성 및 위조·변조·훼손·파기 행위
- ②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행위
- ③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이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에게 대리작성을 요구한 행위
- ④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행위
- ⑤ 기타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춘 행위



2 신고요건

- ◉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협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 인터넷, 우편, FAX 등을 통해 신고 가능

3 신고접수기관

접수기관	신고대상
금융감독원	주권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타 비상장 외감대상 회사 등 (금감원 신고대상회사 제외)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에 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관련회사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9월 18일 (금)	9월 21일 (월)	9월 22일 (화)	9월 23일 (수)	9월 24일 (목)
미 달 러 (USD)	1175.40	1163.60	1160.60	1163.90	1164.40
일 본 엔 (JPY)	1122.48	1113.44	1108.34	1108.79	1104.90
영 국 파 운 드 (GBP)	1525.08	1504.48	1487.72	1482.28	1481.23
캐 나 다 달 러 (CAD)	894.18	881.41	872.01	874.75	869.99
홍 콩 달 러 (HKD)	151.66	150.14	149.75	150.18	150.24
위 안 화 (CNH)	173.69	172.24	171.85	171.40	171.39
유 로 화 (EUR)	1393.26	1378.46	1365.50	1362.64	1357.87
호 주 달 러 (AUD)	860.22	848.44	838.77	834.46	823.41
싱 가 폴 달 러 (SGD)	866.18	856.15	852.10	852.49	848.07
말레이시아링기트 (MYR)	283.95	282.80	281.53	281.51	280.27